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2023. 7.

금 융 위 원 회

# 1. 주택사업자가 주택과 준주택·복리시설을 함께 건설 시 준주택·복리시설의 공사비에 대하여도 보증지원(안 제3조제5호)

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주택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

※ '22.11.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·발표된 제도개선사항임

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준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으로 함

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 라. 입법효과

- 신용보증 대상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기반 확충

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